

北韓法制上の 社會主義 正義觀의 一考察*

吳炳善

- | |
|--|
| I. 서론
II. 북한의 사회주의 법개념
III. 1992년 사회주의 헌법상의 정의의 원리
IV. 결론 |
|--|

I. 서론

1. 문제의 제기

현재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 사회, 문화 등 각부문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그러면 머지 않아 정치적으로 남북통일의 전망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일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때 우리에게 닥칠 커다란 과제로 먼저 남북한간의 체제이질성 극복문제를 들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제도에 관련된 통치체제의 조화나 통일문제와 함께 사고방식, 신념, 이데올로기의 조화와 통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오랜 분단 세월동안 우리와 다른 사상체계, 생활방식을 익히고 생활화한 북한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신봉하는 최고

* 본 연구는 1994年度 教育部 地域研究支援金으로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의 통치이념과 체제의 유지원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와같은 문제의식에서 법제도상에 반영된 기본권의 보장이나 분배적 정의의 실현 등 통치원리를 규범해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적, 사회학적 조사방법은 이 글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다.

2. 1992년 북한헌법의 개정과 국가지도이념의 변화

한 나라의 국가질서형성과 통치운영에 관한 지도이념을 살피기 위하여 실정적 준거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헌법이다.¹⁾ 이는 헌법이 국가의 정치적 존재형태에 관한 기본적 결단을 의미하며 모든 법규범에 대한 기본적 전제로서 각종 법해석의 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헌법제정 또는 개정의 취지나 헌법전문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1987년도 개정 헌법전문에는 헌법질서의 지표가 되는 주권재민의 원칙, 민족주의의 지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강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실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주의의 추구 등 국가지도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와 지도이념의 목표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발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국가안전, 자유보장, 복지사회의 조화적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1948년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이를 폐

1) James W. Ceaser, "Reconstructing Political Science", in S. L. Elken & K. E. Soltan (eds.), *A New Constitutionalism: Designing Political Institutions for a Good Socie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42.

지하고 새로 제정한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이를 개정한 1992년의 개정사회주의헌법의 제안취지를 통하여 계속 국가의 과제와 지도이념을 천명하고 있다.²⁾ 북한은 특히 1992년 개정헌법에 대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반영한 ‘정치헌장’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주요과업들을 규제한 ‘백과전서적인 총서’라고 평가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원칙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천명한다. 이 개정헌법의 골자는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응한 주체사상의 독자성의 강조와 함께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예컨대 개정헌법은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하여 종래의 주체사상의 이론적 근거였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새롭게 규정하여 그의 독창적 혁명이념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개정헌법 제8조에서 북한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어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라고 규정한 것은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중심의 인간관에 바탕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헌법은 제12조에서 기존의 ‘프롤레타리아독재 실시’를 ‘인민민주주의독재 강화’로 변경하였다.

또한 개정헌법은 제1조에서 북한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라고 하여 종래의 주장인 북한의 유일대표성을 강조하고 제2조에서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

2) 1992년 헌법 본문과 1972년 헌법 본문에 관한 자료는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3 제2장을 참조.

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라고 하여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적 정권임을 재천명하고 있다. 개정헌법은 제17조에서 "자주, 평화, 친선은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라고 하여 구헌법 제16조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입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용어상 수정하였다. 이는 북한이 탈냉전, 탈이념의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대외원칙을 추진할 필요성과 사회주의국가간의 국제적 연대가 붕괴된 국제사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이 현실적 의미를 상실함에 따라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활동원칙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헌법은 제18조 3항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주의 법무생활 또는 준법성이란 개념으로 북한주민들을 법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요컨대 북한의 1992년 개정헌법의 주요취지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에 따른 체제수호, 세습권력체제의 강화 및 대외개방의 제한적 필요성의 인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³⁾ 그렇다면 이와같은 헌법 그리고 관련법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북한이 계속 견지하고 표방해오는 사회주의 법률관 및 그 법제도에 반영된 정의관은 어떤 원리와 용어를 구사하고 또한 체계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3) 북한헌법의 개정요지에 관하여, 장명봉, "북한의 변화와 북한헌법 개정", 『북한연구』 1993 겨울호, 대륙연구소, 28-60쪽 참조.

II. 북한의 사회주의 법개념

어느 국가나 통치의 기본원리는 법제에 반영되어 있고 실정법을 통하여 집행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체제가 정비된 국가는 통치원리 중에 정의의 원리가 중요한 국정의 목표가 된다.⁴⁾ 20세기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대체로 빠짐없이 '사회주의' 정의의 원리를 법제에서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법제도 나름대로 독자적 특색을 강조하고 있지만 크게 보아 사회주의법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북한이 완비하려는 사회주의 법률제도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것이 표방하는 실정적 정의관은 어떠한 것인가? 먼저 북한은 법이해의 방법론으로 사회주의 법이론을 채택하여 법을 사회경제적 관계의 본질적 표현이며 역사적 발전과정의 반영이라고 파악한다. 법의 계급성과 이데올로기성을 강조하고 헌법규범의 최고규범성을 부인한다.⁵⁾ 이에 관하여 그들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시즘의 논거로 법이론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의 사회과학원의 「철학사전」에 따라 그들의 법개념의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가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제정 공포하고 권력으로써 그 준수를 담보하려는 일반의무적인 행동규범이 법이다. 법은 정치의 표현형식이며 실현수단이다. 지배계급이 자기의 요구를 사람들의 행동규범형식으로 제정한 것이 법이다.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가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언제나 정치에 복종되며 법의 내용도 정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법은 사회경제제도의

4) 예컨대 미국의 대표적 정치철학자 존 롤즈의 표현대로 “진리가 사고체계의 제1 덕목인 것처럼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 덕목이다”.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3.

5) 이에 관하여, 강진철, “북한법연구의 현황과 과제”, 「법과 사회」, 창간호, 창작과 비평사, 1989, 193-218쪽 참조.

반영이다. 국가주권을 틀어쥔 계급은 자기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맞게 사회경제관계를 확립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고착시킨다... 법의 중요한 특징은 우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공동규범이며 준칙이라는데 있다. 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행동상 통일을 보장하는 특수한 행동규범이며 준칙이다. 법이 없이는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장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질서있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 법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활동의 일반적 기준만을 규정한다. 지배계급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설정하고 거기에 의무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회관계와 질서를 형성하며 유지공고화 한다. 법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으로 그것이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며 국가권력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데 있다..."⁶⁾

이와 같이 북한은 법의 의미에 관하여 계급성, 이데올로기성, 정치적 도구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위의 「철학사전」에 따르면 사회주의법의 생성과정과 역사성, 혁명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인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하여 사회는 점차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사회제도가 교체되고 해당사회성원들의 사회생활, 사회적 활동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인 법도 그에 맞게 발전하게 되었다. 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을 촉진하고 사회발전을 다그치거나 그를 억제하고 가로막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을 촉진하고 사회발전을 힘있게 다그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진 착취계급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였을 때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을 억제하고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수행한다. 착취사회의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를 반영하

6) 북한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철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253-4쪽.

고 그 이익에 복무하는 강권정치의 도구이며 그것은 사회에 강압적으로 적용된다. 자본주의사회에 이르는 모든 착취사회의 법은 착취계급을 위하여 복무하여 왔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고 저들의 국가적 지배를 유지하여 왔다. 착취사회의 모든 법은 그 계급적 성격과 사명으로 보아 철두철미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법이다. 사회주의법은 노동계급의 국가인 사회주의국의 출현과 더불어 태어난 새 형의 법이다. 그것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만들어지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 사회주의법은 계급투쟁의 무기,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이다.”⁷⁾

북한의 법제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법계에 속한다.⁸⁾ 사회주의국의 법제도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발전된 유물사관에 기초하고 있다.⁹⁾ 레닌은 이를 소련사회에 적용시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고정시켰으며 북한은 정권수립시기부터 유물사관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절대적인 영향아래에 최소한도 1992년 헌법개정으로 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용어를 삭제할 때까지는 일관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주의 법사상을 견지하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표방하여 왔다. 북한은 1992년부터 새로이 독자적인 주체사상의 법이론에 입각하여 헌법과 각종 하위법체계를 설명하려 노력하며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 등의 용어를 전면에 내세운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면서 경제적 개방을 유도하는 대외관계입법을

7) 앞의 책, 254쪽

8) 최종고, 앞의 책, 3-6쪽 참조.

9) L. S. Jawitsch, The General Theory of Law,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1, p.17 & p.167.

한다고 해도 내부적 자유화, 민주화, 법치화가 뒤따르지 못할 때 그것은 결국 전시입법이나 의견적 법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¹⁰⁾ 법문에 구사된 용어의 추상성, 선전성과 장식성을 넘어 배경적인 철학과 논리적인 체계를 살펴보면 실체적인 법체계의 구조는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이즘과 같은 사회주의 법체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북한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개념에 바탕을 두고 소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한다. 앞에서 인용한 「철학사전」에 의하면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며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공동생활을 실현해 나가는 국가적인 조직생활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특징은 우선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자각적인 규율생활이라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며 사회주의사회의 법규범과 규정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이익에 복무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법을 만드는 것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만들며 법을 집행하는 것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은 존중시되고 자각적으로 집행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특징은 또한 사회주의 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공동생활을 실현해 나가는 국가적인 조직생활이라는데 있다. 법규범과 규정에 의거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그들의 공동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이다...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근본적으

10) 최종고, “북한법의 최근 동향과 특징”, 『북한연구』 1993 겨울호, 대륙연구소, 25쪽 참조.

로 달리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이다. 사람들의 행동의 통일성과 높은 조직성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특성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조직적인 사회이며 사회의 조직화는 국가적으로는 중요하게 법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회주의법은 모든 사람들의 사회생활, 사회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공동규범이며 준칙이다.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사람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 보장되며 사회의 질서가 정연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착취사회의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이익에 복무하는 강권정치의 도구이며 그것은 사회에 강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공동생활을 실현해 나가는 조직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조직들과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준법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¹¹⁾

라고 설명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시초에는 국가기관의 간부들의 자의적인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었는데 위의 해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현재는 북한의 주민들을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¹²⁾ 즉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법을 일반인이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온 국민이 법을 맹목적으로 준수하도록 몰아가는 선전이자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상적 핵심은 집단주의와 주체사상으로서 결국 전 사회를 집단적 주체사상화하는 운동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11) 앞의 「철학사전」 344-345쪽 참조.

12)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북한법제자료 제1호, 1991, 51쪽 참조.

III. 1992년 사회주의헌법상의 정의의 원리

앞에서 보았던 북한의 「철학사전」 또는 그들의 「법학사전」에서는 법이념에 해당될 정의, 자유나 권리, 공공복리 같은 추상적 개념들의 설명이 자세히 수록된 곳을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본래 이와같은 개념들은 서구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형성 발전되어 온 정치철학 내지 법철학의 용어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은 이 용어들을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변형시켜 법제에 반영하고 있다. 헌법, 민법, 노동법 등 각종 실정법에 표현된 용어나 규정들을 통하여 그 용어의 개념들을 추찰할 수 있을 것이다. 1992년 헌법상에 표현된 정의문제 관련 규정들로부터 최소한 사회주의 기본권개념,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집단주의원칙,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인민복지증진 등 사회보장제도 등의 원리와 개념을 추출할 수 있고 이러한 원리와 개념들을 중심으로 북한법제에서의 정의관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1. 사회주의 기본권 개념

전체주의국가는 국가운영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제약하는 장치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기본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반면에 기본권은 근대 정치사상과 법사상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거나 변질시켜 근대국가로서의 위신을 훼손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은 이와 같은 딜레마를 두가지 장치를 결합하여 타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 즉 기본권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는 권리와 의무의 결합된 제도로 전환되어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기본권 개념은 국가에 아무런 위험도 야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치를 '사회주의' 기본권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본권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고유하고 불가양적 권리라고 파악되는 서구의 개념과는 일치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권개념에 관하여 그 유래와 성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법이 생산관계라는 경제적 기초에 바탕을 둔 상부구조이기 때문에 계급성을 띠게 되는 것처럼 기본권도 지배계급의 도구로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급성을 띤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자본관계에 봉사하는 자본주의 법체제하에서의 기본권은 내재적으로 형식적이고 불완전하다고 한다. 이는 지배계급을 위한 끊임없는 계급투쟁의 논거로서 이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비로소 전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체제가 성립되고 그러한 사회주의 법체제하에서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부합한다고 한다. 따라서 기본권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에서 부여하게 되고 시민은 사회주의 생산체제에 관여함으로써 기본권을 향유하게 된다고 한다. 즉 노동권이 최고의 기본권이 되고 이로부터 제반 사회적 권리들이 파생한다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통합되기 때문에 기본권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봉사한다는 '목적중심적'(goal-oriented) 성질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¹⁴⁾

위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헌법에 나타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13) F. J. M. Feldbrugge, *Russian Law: The End of the Soviet System and the Role of Law*,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pp.214-215.

14) 이에 관하여 Ibid, pp.216-217.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원리는 자본주의법과 사회주의법 사이의 차별성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차이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학자의 지적이 참고가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권리와 의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서로 분리,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질서와 개인의 자유,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개인과 개인을 대립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있고 사후에 그 행위가 타인의 이익이나 국가의 질서를 침해했다면 보상이나 처벌을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집단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는 교차하여 변증법적으로 조화롭게 결합된 합일의 관계를 이룩할 수가 있다고 보아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의 희생 위에서 구하지 아니하며 사회주의적인 의무와 책임은 자유와 권리를 내포하고 또한 보장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사후의 처벌이나 의무부담보다는 사전에 교육과 계몽을 통하여 사회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개인의 행위를 통제한다.”¹⁵⁾

라고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기본권관의 특징인 개인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결합을 반영하는 이 원리는 예컨대 구소련헌법 제59조에서의,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실행은 그들의 의무와 책무의 수행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관념, 즉 집단주의의 ‘윤리’라는 관념에 통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북한의 1992년 사회주의헌법은 제63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

15) 이에 관하여 강진철, 앞의 글, 209쪽.

하여 이러한 취지를 천명하고 있다.

2. 집단주의 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관한 북한헌법상의 집단주의 원칙은 사회주의 정치윤리 및 정의관의 핵심원리에 속한다. 헌법 제63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헌법 제82조는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히 발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하여 북한의 1990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은 제8조에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또한 1978년의 ‘사회주의 노동법’은 제3조에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노동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헌법의 원칙을 각각 하위 실정법에서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원칙은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제 5차대회에서 강조한 것으로 원래 공산주의적 윤리라고 한다.¹⁶⁾ 1961년 10월의 소련 공산당 강령 중 「공산주의 건설자의 도덕규범」 제 5조에서도 “집단주의와 동지적 원조, 즉 각인은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각인을 위한다는 원

16) 법제처, 앞의 「북한법제개요」, 94쪽.

칙”이 설명되어 있다고 한다.¹⁷⁾ 집단주의에 관하여 북한의 사회과학원의 「철학사전」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 집단주의는 노동계급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이다. 노동계급은 온갖 연속에서 벗어나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해방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자주적인 계급이며 조직력과 단결력, 투쟁정신이 강한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집단주의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훌륭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혁명정신이며 사회적 처지와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도덕적 원칙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텔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같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고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되며 공동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¹⁸⁾

즉 사회주의국가에서 노동계급의 해방성, 혁명성, 주인성을 부각하여 이와 같은 성격이 집단주의의 도덕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왜 노동계급의 주인성이라는 명제가 항상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라는 명제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은 집단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 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

17) 위의 책.

18) 앞의 「철학사전」 704쪽.

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게 되며 이것은 집단주의적 생활원칙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정신이 전면적으로 구현되며 그에 기초하여 사회가 공고발전되어 나간다. 집단주의는 자주적인 인간,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이며 활동원칙이다. 사회와 집단을 떠나서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다. 사람은 집단적인 활동으로서만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변혁하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집단을 사랑하고 집단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복종시키는 것은 자주적인 존재로 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집단주의적 원칙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구호에 집중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집단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정신이다. 집단주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집단주의의 최고표현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그것은 노동계급의 수령이 당과 노동계급과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역사적 위업은 오직 수령의 탁월한 영도 밑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이에 의하면 인민의 자주성은 인민의 집단성 속에서만 발현된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이 국가,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전제 아래서는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국가라는 전체와 개인간의 갈등을 전체로 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나 공권력의 개입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관념이 처음부터 존재할 여지가 없다. 이런 논리 아래서는 권리와 의무라는 관념이 결국 하나의 관념, 즉 '윤리'라는 관념에 통합

19) 위의 책.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⁰⁾ 집단주의 원칙에 의하여 구성되
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살펴보면 ‘전
체가 하나를 위하여’ 행하는 내용보다는 주로 ‘하나가 전체를 위하
여’ 행하여야 할 의무규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
이 말하는 집단주의란 그들의 전체주의를 미화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집단주의의 최고표현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
로 나타난다는 것은 수령의 유일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²¹⁾

3.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원칙

북한의 경제제도에 있어서 분배원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 헌법 제24조에는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헌법 제70조에는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헌법의 하위법인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 제37조에는 “노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
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이며 노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

20) 이에 관하여, C. D. Kernig (ed.), *Marxism, Communism and Western Society, A Comparative Encyclopedia*, New York: Herder & Herder, 1972, pp.234-244
Heading "Individual and Collective".

21) 이에 관하여, 민족통일원,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 연구보고서 93-18, 1993
참조.

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는 힘있는 수단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노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근로자들은 성별, 연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라는 구체적 실천규정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이라고 보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노동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관리는 국가 경제활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²²⁾ 따라서 노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노동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하게 된다. 예컨대 천리마운동, 각종의 공훈근로자 칭호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헌법 제29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의 중요성과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노동법은 국가경제계획기구에 의한 분배원칙을 규정한 법으로서 그 기준은 오직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르는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로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말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자신과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분배받는다. 즉 헌법에는 “공민

22) “사회주의정의론은 인간을 오로지 노동자라는 한 측면에서만 보고 개인성은 무시한다.”라고 마르크스는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에서 언급하였다. 이에 관한 고찰에 대하여, Ziyad I. Husami, “Marx on Distributive Justice”, in Cohen, Nagel & Scanlon (eds.), Marx, Justice, and History, Princeton Univ. Press, 1980 pp.42-79.

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원래의 이상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는 대명제에 나타난 바와같이 사회주의적 분배는 노동의 대가에 따른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어야 한다.²³⁾ 북한은 물론 다른 사회주의국가들도 이러한 모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생산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같은 방식을 소위 ‘인센티브 사회주의 분배원리’(Incentive Socialist Principle of Distribution)²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규정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²⁵⁾ 1977년의 구소련 헌법은 경제체제에 관한 제2장에서 두 개의 관련조항을 두고 있다. 제14조에서,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소비에트인민의 노동은 공공의 부, 인민의 후생 및 모든 소비에트시민의 성장의 원천이다. 사회주의의 원리인, ‘각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일하고), 각자에게 그의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ies,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에 따라 국가는 노동수행과 소비를 감독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제20조에는, “공산주의의 이념인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은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다’라는 원리에 따라 국가는 국민들이 창조력, 능력, 재능을 적용할, 그리고 개인의 전면적 개발을 위한 실제적 가능성을 확대할

23) 이에 관하여 Hans Kelsen, *The Communist Theory of Law*, New York: F. Praeger, 1955, p.34.

24) E. Nell and O. O'Neill, "Justice Under Socialism", in James P. Sterba (ed.) *Justice: Alternative Political Perspective*, Belmont, CA: Wadsworth, 1992, p.88.

25) 이에 관하여, William B. Simons (ed.), *The Constitutions of the Communist World*, Alphen aan den Rijn: Sijthoff & Nordhoff, 1980 참조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78년의 중국의 사회주의헌법은 제10조에, “국가는 사회주의의 원리인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라’(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와 ‘각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 그의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를 적용한다. 노동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의 명예로운 의무이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60년의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 헌법은 그 전문 중에, “사회주의의 기본적 원리인 ‘각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노동에 따라’는 이미 성립이 되었고... 노동이 생활의 일차적 필요조건이 되는 발전의 후속단계에서는 분배의 최고원칙, 즉 공산주의의 원리인 ‘각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ies,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68년의 동독헌법도 위의 예와 유사한 분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제2조 3항에 의하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는 영원히 폐지된다. 인민이 생산하는 것은 인민에게 속한다. 사회주의의 원리인 ‘각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 그가 생산한 것에 따라 (분배한다)’가 실천되고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회주의의 분배의 원리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즉 사회주의 사회의 한 조건이 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라는 원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이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는 자기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

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능력에 따라 일하며 그에 따른 생산의 효율과 사회발전을 도모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4. 인민의 복리증진 등 사회보장제도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25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헌법 제72조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활동은 지배계급에 의한 착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립된 북한에서는 착취의 사회경제적 근원이 없어져 노동생산물이 전적으로 근로자 자신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있고, 인민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 사회하에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된다고 한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보건의료를 탈상품화하였다고 한다. 즉 국유화를 단행하여 사유재산제를 철폐하듯 사적의료를 근절시키며 보건인력을 양산하고 의료기관을 확충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영의료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의료지식을 탈신비화시키고 보건인력 상호간 및 일반주민과 보건인력 간의 권위와 지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보건의료의 보편화 내지 대중화를 실현시켰다고 한다. 북한이 흔히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보건의료부문의 복지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사회주의 생산양식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사회적 계급차이를 불식시키고 이에따라 사회구성원의 긴장과 갈등 등 예방가능한 사회적 질병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²⁶⁾

무상치료제나 보건의료의 대중화와 같은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하는 일반 서민대중의 입장에서 일견 발전된 제도로 보일지 모른다. 즉 확실히 국민복지정책적 차원에서 매력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 의료수준의 향상에 대한 보장이 어렵고, 방대한 의료서비스배급이 모든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것은 한때 사회보장복지제도를 지나친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광범하게 실시하였던 영국이나 스웨덴에서 소위 '복지병'이라는 사회적 병폐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사례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IV. 결 론

북한법은 사회주의법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법의 일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표방하는 1) 민족민주주의 권력의 강화, 또는 인민 또는 근로인민의 동맹권력의

26) 이에 관하여, 법제처, 앞의 「북한법제개요」 제7장 제2절 참조.

강화, 2)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의 발전, 강화, 보호, 3)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제한, 4) 민족적, 인종적 평등의 원리들²⁷⁾을 북한도 따르고 있다. 요컨대 사회주의법의 기본요소인 '권력의 집중원칙'이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북한법은 한편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법과는 다른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전부를 결정한다."는 원리로 인간의 창조적이며 자주적인 입장을 강조한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수령론'으로 이어진다. "노동자계급의 수령은 영도적 지위를 가진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로서 통일, 단결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수령은 바로 김일성이었고 헌법상의 주석이다. 북한에서 권력은 주석이 독점하고 있다. 주석은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통하여 헌법과 입법기관의 상위에 있다. 수령의 지도 아래에 있는 일반대중은 수령의 '교시'나 그에 근거를 둔 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사회주의 법무생활이고 이를 통하여 주민을 법적으로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법이 권력의 수단으로만 쓰이고 있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결국 '정치주의' 내지 '인치주의'의 도구가 되는 셈이다.

한편 북한의 주체사상의 법원리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법원리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들 수 있다. 이 원리는 "어떠한 폭력적 지배 혹은 자의적 지배에도 반대하고 다수결원리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의 분립, 사법권의 독립, 법치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및 국제적 평화주의

27) 이에 관하여, V.치르킨, Yu.유딘, O.지드코프/송주명 옮김, 「맑스주의 국가와 법 이론」, 도서출판 새날, 1990, 289-290쪽 참조.

가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는 국민의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를 보장하여 인권의 향유 및 사회정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사상의 법원리는 주권이 소수 내지 개인의 손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국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의무의 주체로서만 의의를 갖게 되어있다. 북한의 법제도는 요컨대 인간의 가치나 행복의 보장, 인권과 정의의 실현보다는 거대한 집단주의의 획일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